

■ 최신 법령 ■

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

1.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

사용자는 부속 기숙사를 설치·운영할 때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, 기숙사의 설치 장소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근로기준법」이 개정(법률 제16270호, 2019. 1. 15. 공포, 7. 16. 시행)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, 기숙사에는 화장실, 목욕시설 및 채광·환기를 위한 적절한 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,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장소에는 기숙사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며,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침실·침구 등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부속 기숙사의 설치·운영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.

2. 다운로드 : [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\(2019. 7. 16. 시행\)](#)